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55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위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해서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 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 로 개정(안 제3조)
- 나. 전반적으로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 현행화, 자구 수정 및 용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ps7430@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19세 이상 39세”를 “18세 이상 45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청년 정책”을 각각 “청년정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 정책”을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일자리·문화·복지”를 “기획예산·경제·문화·복지”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청년정책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추진사업)”을“(사업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청년 정책”을 “청년정책”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사업수행)”을“(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을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추진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을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로 한다.

제17조 중 “「강릉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강릉시 포상 조례」”를 “「강릉시 포상조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u>19세 이상 39세</u>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u>청년고용촉진특별법</u>」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2. ~ 5. (생략)</p> <p>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청년 정책</u>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p> <p>2. <u>청년 정책</u> 사업의 발굴 및 추진</p> <p>3. ~ 5.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u>청년 정책</u>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u>청년정책위원회</u>(이하</p>	<p>제3조(정의) ----- -----.</p> <p>1. ----- <u>18세 이상 45세</u> ----- ----- -----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청년정책</u> ----- --</p> <p>2. <u>청년정책</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 <u>청년정책</u>----- ----- -----</p>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일자리·문화·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 ⑦ (생략)

제11조(회의)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생략)

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 다. (생략)

라. 지속적인 청년 정책의 교류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3. ~ 8. (생략)

제13조(사업수행) 시장은 제12조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획 예산·경제·문화·복지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청년정책실무위원회 -----

제12조(사업의 추진)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청년정책 -----

3.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의 위탁) -- 제12조에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법 규 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